

조달청, 조달행정쇄신 방안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 조달제도 국제화

[1] 조달절차 정비

조달시장개방에 따라 「내자=국내업체 조달」이라는 등식은 더이상 불가능해져 조달제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므로 내·외자 구분을 폐지한다.

현행 내·외자 구분에 따른 구매 절차는 외자구매감소로 인한 실효성이 미흡하고 이원화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라 현행 구매자금 성격, 국산조달가능 여부에 따른 내·외자 구매 절차를 폐지한다.

구매대상물품의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 여부 및 국제조달 필요성에 따라 국내조달절차·국제조달절차로 구분 운영한다.

국산품이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1차 수요기관이, 2차 조달청(해당 구매부서)에서 판단 결정한다.

※ 구체적 시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

[2] 조달관련 법령체계 일원화

외자구매와 관련된 특례규정상의 제규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통합, 적용법 체계를 일원화한다.

공고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대가의 지급 방법, 제3자 단가계약 등에 관한 적용법 체계와 사용언어 등을 일원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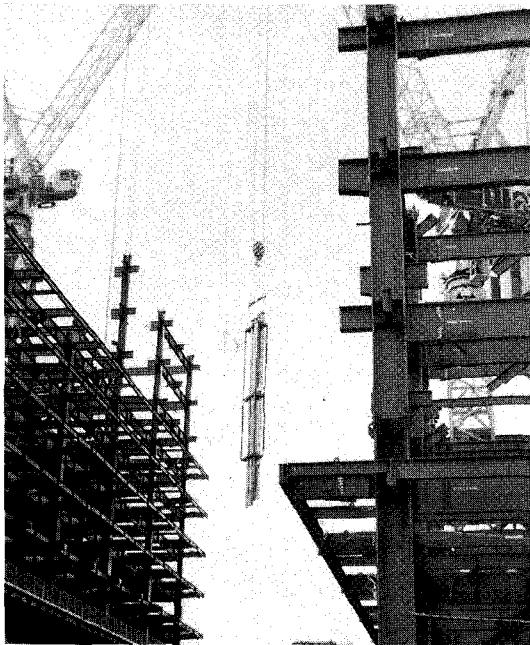
[3] 조달정보의 공개 제도화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는 97년부터는 모든 경쟁입찰과 계약체결 결과를 적절한 출판물을 통해 상세히 공고해야 하므로 관보를 발행, 공고한다.

[4] 조달통계 보고의 체계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WTO사무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조달에 관한 기본적 통계자료수집·제출업무 등 총괄업무를 재정경제원에서 관장한다.

■ 중소기업 단체적 수의계약제도 개선



[1] 단계적으로 경쟁계약제도로 전환

단체적 수의계약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운영한다. 다만 이 제도의 당초 시행 취지를 감안하여 축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의 제한경쟁 품목으로 지정·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간의 경쟁제도로 전환하여 중소기업간의 적정경쟁을 유도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세한 중소기업 보호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품목에 대해서만 단체적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한다.

[2] 단체적 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

KS획득, 품질인정 등 품질수준 항목의 비율을 94년 30%에서 40%로 확대 적용하는 등 품질과 형평에 맞는 공정한 배분 유도 및 물량배정시업체의 전문화율을 반영하여 전문화를 유도한다.

현재 중소기업, 새마을 공장,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조합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비

한다.

■ 조달업무 자치단체 이양 확대

[1] 지자체·자체구매·계약범위 대폭 확대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자체 실시에 따라 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등 중앙조달기관에 위임·집행하고 있는 중앙조달업무를 단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체 집행하도록 대폭 위임한다.

1단계로 금년은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자범위를 2천만원 이상(외자 : 2만달러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조정하여 지자체가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이양한다. 다만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중앙조달을 희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계속 공급을 지원한다.

98년 이후 시행할 2단계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기관 지위를 당연기관(의무적 수요기관)에서 임의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희망할 경우 개별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중앙조달기관에 구매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확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 조달청에서는 단가만을 정해 업체와 계약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직접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절감을 도모한다. (납기 2분의 1단축)

■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1] 다양한 조달방식의 도입운용

① 2단계 경쟁입찰제도 도입

1단계에서는 기술제안서의 요청, 제출, 평가 및 협의 등 규격을 확정하고 2단계에서는 가격입찰서의 제출과 평가 및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기술규격서의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결정한다.

② 경쟁적 협상계약제도 도입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제안요청서(REP)를 송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 상의한 후 필요시 제안서의 내용을 보완한 후 최종적인 Best and Final Offer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한다. (구체적 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 결정)

[2] 낙찰제도 개선

① 계약이행능력 사후심사제의 도입

일반적인 물품구매나 공사계약에 있어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되 낙찰대상 가격이 예정가격의 85% 미만인 경우 낙찰대상업체가 신규업체 이거나 과거 계약이행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은 경영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납기내 계약이행능력 등을 계량화하여 결정한다.

② 종합낙찰제 확대 운용

변압기, 모터펌프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한해 운용하고 있는 종합낙찰제 대상품목을 복사기, PC용프린터 등 취득가격에 비해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까지 확대한다. 평가방법은 제품의 가격, 수명기간 동안의 유지비용, 수명기간 경과후의 잔존가치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비용 평가방법을 개발 도입한다.

③ 턴키입찰 활성화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설계기술 발전을 위해 턴키입찰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입찰이 부적절하다고 판정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턴키입찰로 집행하도록 발주 기관에 권장한다. 설계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탈락자의 설계비 사후 보전방법을 제도화하고 턴키입찰에도 P·Q를 실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일정수 이내로 제한, 무분별한 입찰참가 및 과다한 사회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1] 가격조사 협조체제 구축

가격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즉 관납업체의 세무보고용 세금계산자료에 대해 국세청과 적극 협조한다. 원가계산 자료의 적기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자의 원가자료 사전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원가계산의 단순화 및 적정성 제고

① 원가계산 경비 비목의 조정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상의 항목 21개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원가계산서상의 비목과 동일하게 16개 항목으로 일원화한다.

② 원가계산기관의 전문화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기계, 화공, 건설 등 전문 분야별로 세부하여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적정 원가 산출을 유도한다.

③ 원가계산의무 완화

정부구매가 50% 이상인 품목(대량구매 품목)이라도 실질경쟁이 이뤄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의무를 완화한다. 이에따라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산출된다.

④ 원가심사제도 운영

조달청 내부에 원가계산 결과 또는 기준을 심사할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원가계산에 대한 가격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 자료의 사전누출 예방책을 강구한다.

⑤ 표준품셈제도 폐지 및 적산제도 도입·시행

비현실적인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에 의한 적산제도를 도입·시행한다.

[3] 예정가격의 성격 전환

예정가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품질위주의 조달제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산정 및 계약

자 결정시 품질규격 요소를 강화한다. 원가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사후심사시 품질을 우선 고려하고 경쟁적 협상계약제도 및 2단계 경쟁입찰제도 활성화를 통해 품질확보 노력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예정가격의 성격을 현행 계약자 선정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응찰가격의 적정성, 응찰자의 계약이행능력 판단 및 적정품질 확보의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입찰참가 자격심사제도 개선

[1] 물품구매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도입

일정규모(50억원) 이상 물품구매시 입찰자격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는 품질확보를 도모한다. 주문제작 물품중 전체 시스템으로서 성능보장이 요구되는 설비, 대형정밀장비, 지속적인 A/S 요구 물품 등에 적용한다. 다만 이 제도가 입찰능력 사후평가제도와 중복으로 진입규제 및 업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운용한다.

[2] 부실업체 등록 예방책 강구

현행 조달업체 등록제도를 유지하되 서류심사 강화 등으로 부실기업의 등록을 사전에 예방한다. 일정비율의 업체를 무작위 추출하여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서 형사고발 등 조치하고 불량품 납품과 납기지연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체가 등록시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여 불이익 조치한다.

[3] 입찰공고시 공급업체 입찰참가 제한

생산과 유통의 분리 및 전문화 추세와 조달시장의 개방 등을 감안하여 공급업체의 입찰참가를 대폭 확대한다.

가전산업과 같이 공급능력이 있는 공급업체가 존재하거나 하자처리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허용한다.

특히 대기업에게 OEM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급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 각종 조달절차 개선

[1] 국가기관 자율조달 범위 확대

조달범위의 자치단체 이양 확대와 함께 국가기관 자율조달범위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올해 안에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 서비스 용역제도 개선

서비스 용역대가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적정품질확보를 유도한다.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PQ제도 운용 등 물품구매와 동일한 차원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 운용하여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

[3]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운영 개선

사전에 입찰참가 희망 업체로부터 일괄적으로 자격심사 신청을 접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에 등재된 업체만 일정기간(1~2년)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원칙적으로 인정해준다.

대형특수공사는 현행과 같은 건별심사를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4] 시설공사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에 의한 보증시공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단계로 계약보증금 납부기준을 현행의 2배로 상향 조정하여 계약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연대보증인제도 또는 계약보증금 납부」의 선택적 제도 운영을 한다.

2단계는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은행보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은행에 의한 실질적 업체 심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신속한 보증시공을 도모한다.

[5] 보증보험증권 약관 개선

보증보험증권에도 공제조합 보증서와 같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실제 준공일(또는 납품일)까지 유효하도록 약관 내용을 변경한다.